평택시 공고 제2021-2950호

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

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
2021년 9월 23일

평 택 시 장

1. **적용지역** : 평택시 전역
2. **처분기간** : 2021. 9. 23.(목) ~ 2021.10. 2.(토) / 10일간
3. **처분대상**
   - 1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근로자
   - 직업소개소 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일용직 근로자
   - 1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·축산 농가 대표자 및 근로자
4. **처분의 효력 발생일** : 2021. 9. 23.(목) ~ 2021.10. 2.(토)
5. **처분내용**

다음에 해당되는 내국인 및 외국인(무자격 체류 외국인 포함) 검사 대상자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19 PCR 진단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- 1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근로자
- 직업소개소 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일용직 근로자
- 1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 농가 대표자 및 근로자

단, 처분 시작일(2021.9.23.) 전 7일 이내 검사자는 제외함

※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(횟수, 완료여부)와 관계없이 검사를 이행해야 함.

※ 자가검사 키트, 신속항원 검사는 PCR 진단검사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.

※ 무자격 체류자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.

※ 근로자 신규채용(일용직포함) 시 PCR 진단검사를 사전 실시하게 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고용할 것

6. 검사장소

○ 보건소 및 보건지소

- 평택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(평택시 평택5로 56)
- 송탄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(평택시 서정로 295)
- 안중보건지소 임시선별검사소(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00)

※ 검사시간

- 평　일 : 09:00~20:00(중식시간:12:00~14:00, 석식시간:17:00~18:00)
- 토・일요일 : 09:00~18:00(중식시간:13:00~15:00)

○ 관내 의료기관

- 굿모닝병원 임시선별검사소(평택시 중앙로 338)
  * 평　일 : 07:30~21:00 , 토・일요일 : 07:30~17:00
- 평택성모병원 임시선별검사소(평택시 평택로 284)
  * 평　일 : 08:30~20:00(중식시간:12:30~13:30, 석식시간:17:30~18:00)
  * 토・일요일 : 08:30~17:00(중식시간:12:30~13:30)
- PMC 박병원 선별진료소(평택시 송탄로 33)
  * 평일・토요일 : 08:30~21:00

○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

-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휴게소(서울방향) 임시선별검사소
  (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72)
-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(서울방향) 임시선별검사소
  (화성시 팔탄면 서해안고속도로 302)
-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휴게소(인천방향) 임시선별검사소
  (용인시 처인구 주북로 66-14)
-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휴게소(하남방향) 임시선별검사소
  (이천시 신둔면 서이천로 853번길 346-129)

※ 검사시간(연휴기간 정상운영)

* 평일,토・일요일 : 11:00~20:00(중식시간:13:00~14:00, 석식시간:17:00~18:00)

7. 검사비 : 무료(의료기관 포함)

8. **검사 시 준비물** : 신분증(외국인등록증, 여권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단, 신분증 미소지 외국인은 고용주가 증명하는 서류

9. **검사결과 통보방법** : 검사 후 1~3일 이내 개인휴대폰 개별 문자발송

10. 처분근거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2조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, 제82조

11. 처분사유
- 관내 기업체 및 농·축산 농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중심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대상업체(농가 포함)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확산이 우려되어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해 지역 내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조치 필요

12. **불복절차 및 위반에 따른 벌칙 등**

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 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,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13. 처분담당자

이 름	소 속	연 락 처	비 고
박현배	평택시 기업지원과	031-8024-3443	본청 관할 1인이상 외국인 고용 100인 미만 기업체
안정화		031-8024-3432	산업단지 관할 1인이상 외국인 고용 100인 미만 기업체
신중일	평택시 일자리창출과	031-8024-3531	직업소개소 종사자 및 직업소개소 이용 일용직 근로자
유지예	평택시 농업정책과	031-8024-3621	1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 대표자 및 근로자

이 름	소 속	연 락 처	비 고
양일창	평택시 축산과	031-8024-3813	1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축산농가 대표자 및 근로자
송정욱	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	031-8024-6431	송탄출장소 관할 1인이상 외국인 고용 100인 미만 기업체
최지혜	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	031-8024-8381	안중출장소 관할 1인이상 외국인 고용 100인 미만 기업체